

제18차 정기총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5. 02. 24(월) 16시
2. 장 소 : 합정실뿌리복지센터
3. 성 원 : 총 52명 중 40명 성원 (참석 37명, 위임 3명)
4. 심의의안
 - 1) 2024년 감사보고 승인
 - 2)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
 - 3)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 - 4) 정관변경(안)

[성원보고 및 개회선언]

- 김민선 사무처장이 성원보고함
- 최 연 의장이 총회 개회를 선언함

[회순채택]

- 의장이 회순 원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함

[의사록 서기 지명]

- 서민영 회원 서기로 추천되어 최 연 의장이 회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서기로 지명함

[전차회의록 낭독]

-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명연 사회자가 전차회의록을 요약하여 낭독함
- 의장이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물은 후, '이의없음' 전원동의를 얻어 전차회의록 원안대로 채택함

[제1호 의안] : 2024년 감사보고 승인

- 신금석, 우수명 감사의 법인본부, 지역조직, 산하기관 감사보고서 열람함
- 우수명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함
- 정준혁 회원의 동의와 이선주 회원의 재청으로, 의장이 다른 회원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동의,재청하여 원안대로 승인함

[제2호 의안] :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

- 법인 본부와 지역조직(강원지회,광주지회,도봉지회,성남지회,송파지회), 산하기관(도봉지역자활센터,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, 방아골어린이집(결산제외), 방아골우리동네키움센터,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, 방학동어르신복지관, 장위종합사회복지관)의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열람함
- 김민선 사무처장이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함
- 김승수,유은영 회원의 동의와 이철진,최은진 회원의 재청으로, 의장이 다른 회원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동의,재청하여 원안대로 승인함

[제3호 의안] :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승인

- 법인 본부와 지역조직(강원지회,광주지회,도봉지회,성남지회,송파지회), 산하기관(도봉지역자활센터,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, 방아골어린이집(예산제외), 방아골우리동네키움센터,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, 방학동어르신복지관, 장위종합사회복지관)의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열람함
- 김민선 사무처장이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에 대해 설명함
- 한상진,이우진 회원의 동의와 이두진 회원의 재청으로, 의장이 다른 회원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동의,재청하여 원안대로 승인함

[제4호 의안] : 정관변경(안) 승인

- 변경내용: 제10조(임원의종류와정수) '회장' 용어 '이사장'으로 변경
- 변경사유: 시대반영

변경 전	변경 후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부회장 1인 <개정 2020.03.09.> 3. 이사 10인 이상 - 20인 이내 4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4.03.12>	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이사장 1인 <개정 2025.02.24.> 2. 부이사장 1인 <개정 2025.02.24.> 3. 이사 10인 이상 - 20인 이내 4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4.03.12>
제11조(임원의 선임)	제11조(임원의 선임)

<p>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.</p> <p>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</p>	<p>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.</p> <p>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4조(상임이사)</p> <p>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</p>	<p>제14조(상임이사)</p> <p>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16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③ 감사는 다음의 직을 행한다.</p>	<p>제16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감사는 다음의 직을 행한다.</p>
<p>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</p> <p>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</p>	<p>제17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</p>
<p>제20조(구분 및 소집)</p> <p>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<개정 2007.12.13></p> <p>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04.12. ></p>	<p>제20조(구분 및 소집)</p> <p>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21조(총회 소집의 특례)</p> <p>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.</p>	<p>제21조(총회 소집의 특례)</p> <p>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본회의 재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 	<p>제23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. 본회의 재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<p>5. 사업계획의 승인</p> <p>6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5. 사업계획의 승인</p> <p>6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25조(이사회)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</p>	<p>제25조(이사회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26조(구분 및 소집)</p> <p>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</p> <p>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개정 2008.12.15></p> <p>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04.12 ></p> <p>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</p>	<p>제26조(구분 및 소집)</p> <p>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문서포함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04.12.></p> <p>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</p>
<p>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</p> <p>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<p>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</p>	<p>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</p> <p>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<p>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</p>
<p>제28조(서면결의)</p> <p>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</p>	<p>제28조(서면결의)</p> <p>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	<p>제30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<p>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</p> <p>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</p>	<p>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</p> <p>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</p> <p>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</p> <p>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25.02.24.></p>
<p>제31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본회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이사, 기타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,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7.12.13.></p> <p>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31조(운영위원회)</p> <p>① 본회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위원장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운영위원회는 이사, 기타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,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가 임명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/p> <p>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
<p>제41조(구성과 역할)</p> <p>①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04.12 ></p> <p>③ 부설기관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	<p>제41조(구성과 역할)</p> <p>①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부설기관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
<p>제43조(지역조직 대표)</p> <p>① 지역조직의 대표는 해당 지역조직의 의결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지역조직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할 경우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 <개정 2014.03.12></p>	<p>제43조(지역조직 대표)</p> <p>① 지역조직의 대표는 해당 지역조직의 의결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가 임명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지역조직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할 경우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. <개정 2014.03.12></p>
<p>제45조(구성과 역할)</p> <p>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</p> <p>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되,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45조(구성과 역할)</p> <p>① 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되,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가 임명한다. <개정 2025.02.24.></p> <p>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</p>

- 제안된 정관변경(안)을 열람함
- 김민선 사무처장이 정관변경(안)에 대해 설명함
- 이은아,김유정 회원의 동의와 최은진,이세인 회원의 재청으로, 의장이 다른 회원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동의,재청하여 원안대로 승인함

[폐회]

- 최 연 의장이 회원에게 다른 논의사항이 있는지 물은 후, 의견 없음을 확인하고 제18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포함.

▣ 이상으로 당 법인의 2025년 제18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한 출석한 이사 전원이 다음에 각 기명 날인함.



2025년 2월 24일

사단법인 일촌공동체



의장 최 연 (인)

이사 강 홍 수 (인)

이사 김 승 수 (인)

이사 송 건 (인)

이사 신 대 영 (인)

이사 전 용 호 (인)

이사 정 병 두 (인)